
Q & A

Q1. 그린리모델링이란 무엇인지 ?

A.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 리모델링을 말하며, 단순 창호·설비 교체 등 개보수뿐만 아니라 증축, 개축, 대수선 등을 포함함 (단,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시 증·개축, 대수선 등 인허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은 지양)

Q2.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의 '준공' 기준이란?

A. 준공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말하며, 실 준공일과 사용승인일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, 별도의 준공 관련 서류를 증빙하면 확인 후 준공일 인정(증빙 예시: 준공검사조서 등)

Q3. 그린리모델링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?

A. 사전조사 및 컨설팅(3월 5일까지 공문접수)을 신청한 건축물의 경우 LH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전문기관(GR컨설팅업체)을 통해 **현장조사와 설계컨설팅**을 실시하며,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함. 대상 선정 후 사업비 교부가 되면 지자체가 설계와 공사 발주를 추진

* 사전조사 및 컨설팅은 국비로 지원하며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공모 신청 가능함

Q4. 사업비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?

A.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범위는 설계비와 공사비이며, 공사비의 경우, 필수공사 + 선택공사 아이টে에 대한 공사비 및 추가지원가능공사의 항목을 포함

- “서울시,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”(이하 “서울·중앙·공공”)이 소유(임차 포함)한 건축물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%,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% 지원가능
- GR사업 건축물당 총사업비는 연면적(건축물대장)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비 지원 가능한 총사업비 한도는 300만원/3.3㎡이고 총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 자부담
- 서울·중앙·공공*의 경우 건축물당 150만원/3.3㎡(300만원×50%)까지 국비 지원가능
 - * 서울 : 서울특별시, 관할 구, 산하 공공기관 / 중앙 :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/ 공공 :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(단, “서울시 외 지자체” 산하 공공기관은 제외)
- 그 외* 210만원/3.3㎡(300만원×70%) 까지 국비 지원가능
 - * 그 외 : 서울시 외 지자체, 관할 시군구, 산하 공공기관
- 단, 소규모 건축물(건축물대장상 연면적 300㎡미만)인 경우 국비 지원 가능한 총사업비 한도는 400만원/3.3㎡이고 서울·중앙·공공은 200만원/3.3㎡(400만원×50%), 그 외 280만원/3.3㎡(400만원×70%)까지 국비 지원
- 기타 ‘21년 GR사업 관련한 용역, 공사, 이주비, 기반시설비용 등에 국비 지원 가능
 - * 자세한 사항은 「‘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명회」 자료 참조

Q5. 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2층에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?

A. 복합용도 건축물 면적(전용면적) 중 사업대상 용도면적(전용면적) 비율이 50% 이상시 전체건축물을 대상으로 100% 지원가능. 해당시설의 어린이집·보건소·의료시설 전용면적이 건축물 50% 미만은 지원불가

Q6. 설계사 및 시공사는 누가 선정하는지?

A. 해당 건축물을 소유·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「국가계약법」, 「지방계약법」 등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

Q7. 민간소유의 건물을 취약계층 이용 용도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?

A. 임차한 건축물(준공 후 10년경과)은 임차기간이 2026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약체결 된 경우 지원가능

- 단, 사업대상기관이 임차한 건축물이 복합용도인 경우, 임차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며 민간이 사용하는 타 용도 지원불가

Q8. 해당 공사를 올해 완공해야 하는지 ?

A. 올해 착공 및 완공 목표

* 부득이한 경우 차년도 예산 이월 가능

Q9. 공사 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이주비 등 설계비와 공사비 이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은?

A. ‘21년 GR사업 관련한 용역, 공사, 이주비, 기반시설비용 등에 국비 지원 가능

* 자세한 사항은 「‘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명회」 자료 참조

구 분	세 부 내 용	비 고
GR 용역	설계, 감리비, 폐기물처리(석면처리 및 관련감리포함), 구조안전점검, 설계공모대행 등	
GR 공사	공사(철거포함 가능) ,관급자재 조달 등	
이주비	임시공간 임차비용, 이사비용	차량운행비(통학,출퇴근), 집기류등 지원불가
기반시설	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, 전기용량 증설 관련 비용 등	기반시설비용이 GR 공사비 보다 큰 경우 지원 불가

Q10. 사업공모 신청서에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선정 이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한지?

A. 전문기관(GR컨설팅업체)의 사전조사·컨설팅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는 아래와 같음

구 분	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
필수공사	고성능 창 및 문, 폐열회수형 환기장치, 내·외부 단열보강, 고효율 냉난방장치, 고효율 보일러, 고효율 조명(LED)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),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(BEMS)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
선택공사	Cool Roof(차열도료), 일사조절장치, 스마트에어샤워, 순간온수기 *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
추가지원 가능공사	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, 석면조사 및 제거, 구조안전보강, 기타 GR관련 건축부대공사,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, 전기용량증설 등 GR관련 전기공사, 이사비 및 임차비용

* 필수공사 항목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사업신청 및 지원 가능

- 전문기관(GR컨설팅업체)은 GR사업건축물별 총사업비 한도내에서 아래의 컨설팅 우선 검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,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신청함

<GR컨설팅 및 설계·공사 우선 검토순위>

- ① 필수공사·선택공사를 적용하여 에너지성능개선(절감률)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
* 에너지 절감률 30% 이상을 목표로 추진. 미달성 사업지의 경우 사유서 제출필요
- ② 추가지원 가능공사 중 “석면조사 및 제거”, “구조안전보강” 적용 검토
- ③ 추가지원 가능공사 중 나머지 항목을 적용 검토

- 지자체에서 설계 발주 후, 현장여건에 따라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, 중대한 사항*은 사업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국토부와 LH에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

* 중대한 사항 : GR사업 선정시 수립된 에너지 절감계획이 10%이상 하락하는 경우

** 국비 지원금액 증액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허

*** 에너지절감률이 경미하게 변경(10%미만)되고 변경금액을 GR사업대상기관이 부담할 경우, 사업계획변경을 자체처리 가능함. 단 사업준공 및 정산 보고서 변경내용을 일괄로 보고

